

# 檀園 金弘道의 平生圖 屏風에 나타난 人物들의 服飾에 關한 考察

—世宗博物館의 所藏品을 중심으로—

孫敬子 · 任榮子

-----〈目 次〉-----	
I. 緒論	(3) 儒生 · 士人服
II. 本論	(4) 中 · 庶人服
1. 各 12場面에 나타난 人物들의 服飾	(5) 婦女子服
2. 各 身分에 따른 服飾	III. 服飾에 나타난 特징
(1) 冠服	IV. 結論
(2) 戎服	

## I. 緒論

본 논문은 服飾 七號에 논고된 「檀園 金弘道의 平生圖 屏風에 나타난 人物들의 冠帽에 關한 考察」의 후속인 복식양식에 關한 고찰이다.

의복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인류사와 함께 변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의 여러 제도, 문화가 발달하고 문화될수록 생활문화의 큰 면을 차지하며 그 나라, 그 사회, 그 시대의 여러 측면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상징하고 있다.

平生圖의 시대적 배경은 檀園이 생존해 있던 朝鮮 後期의 英 · 正祖代로 보아야 할 것이며, 朝鮮王朝 500年을 크게 5期로 나누어 볼 때 第3 ~ 4期에 속하는 약 100년간의 시기로, 가장 중 흥기에 해당된다. 이는 前考에서 언급되었듯이 倭 · 胡亂後의 민족적 자각, 왕조의 중흥과 더불어 안정된 문화 · 경제, 실학의 風 · 西學의 전래로 인한 사회계층의 움직임과 민간경제의 발달 등이 주요인으로 독특하고 우수한 민족문화가 고조에 달했던 시기로, 복장문화에도 그 영향은 반영되어 이 시기에 걸쳐서 실질적인 우리의 전통복장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檀園의 平生圖는 현실적이 아닌 假象圖라는 문제점과 繪畫만이 갖는 독특한 표현성의 추구로 인하여 복장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사료적 가치로서의 문제점과 한계성은 갖고 있으나, 이 그림은 風俗圖가 갖는 公共的 · 市井的인 면을 고루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또한 그 당시에 살던 인간들의 삶의 형태와 영원의 표본인 현실세계의 理想圖이며, 社會 規範文化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 規範에 따른 복식문화를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되나 각장면 속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표현에서 회화학적인 표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각 장면의 옷을 먼저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것을 시대 배경이 되는 조선후기에 저술된 일부 문헌에서 복장관계 기록을 통해 착용된 일반적인 복장을 신분별로 분리하여 보았다.

다음에는 복장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생활 양상에 따르는 규범을 찾을 수 있으며 장면마다의 표현의 연결에 무리가 없으며 생활의 가치관과 옷으로 본 규범이 매우 잘 나타나고 있으나 옷의 치수, 색깔 등이 부분적으로 회화학적인 곳도 생각되어 특히 조사하기로 하였다

## II. 本論

## 1. 各 12場面에 나타난 人物들의 服飾

12장면에 나타난 복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場面 1〉 돌잔치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男 子	主人公	저고리	紅色 색동소매	바지	素色			돌띠	紅色		戰 服	藍色	
	曾祖父					道袍	淡青色	條兒		갓신			
	祖 父			바지	素色	道袍	藍 色	條兒	紅色	갓신			
	父 親					道袍	玉 色	條兒		갓신			
	少 年	저고리	淡青	바지	素色					草履	귀주머니	紅色	검정댕기
	男 儿 (3人)	저고리	紅色	바지	素色			띠	藍色	草履			
女 子	祖 母	삼회장 저고리	미색·자색 회장	치마	玉色					"	치 마 허리띠	素色	
	母 親	저고리	연분홍색	"	藍色					"	"	"	
	奴 婢 女人 1	저고리	素色	"	玉色					"	"	"	앞 치 마 (素色)
	2	반회장 저고리	옥색·자주 회장	"	青色					"	"	"	속 바지
	3	"	담 청 색 남 끝 동	"	玉色					"	"	"	앞 치 마 (素色)
	4	"	연분홍색 자주회장	"	青色					"	"	"	
	處 女	삼회장 저고리	연 미 색 자주회장	"	藍色					"	"	"	
	女 儿	색 동 저고리	초록 색 紅 色	"	미색								

〈場面 2〉 글공부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男 子	훈 장					道袍	淡青色						
	접 장					"	"	條兒					
	소년 1					창옷	玉 色						검정댕기
	" 2					"	青 色	條兒		갓신	行 纓		쥘부채
	" 3, 4					"	"	"		"	"		쥘부채 · 검정댕기

〈場面 3〉 과거보기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男 6	試 官					官 服	淡紅色	帶		木靴			胸背가없다
	書 吏 人					團領袍	淡青色	條兒		갓신	行 纓		

舉者					道袍	青色	條兒					
皂隸 5人					창옷	素色	"		草履	行纏		
과거 응시자					"	"	"		"			

〈場面 4〉 장원급제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考
男 子	主人公					冠服	青玄色	帶		木靴	笏		胸背가 없다
	廣大 1					袍	紅色·綠色 汗衫			갓신	주머니 行纏	黃·綠色	孔雀羽
	" 2					袍	紅色·藍色 汗衫			"	"	藍色	"
	" 3					袍	紅色·白色 汗衫			"	"	藍·紅色	"
	馬夫 2人			바지	素色	黑衣	黑色			革履	行纏		
	倍行人 4人					帖裏	青色	條兒		갓신	"		절부채
	細樂手 5人					"	"			草履	"		
	細樂手 1人					黑衣	黑色			"	"		
	引路 1					창옷	青色	條兒		갓신	"		紅牌
	" 2					帖裏	淡青色	"		"	"		
女 子	어린이 2人	저고리	紅色	바지	白色								
	少年 4人	"	青·白色	"	"								
	女人 1	"	黃色	치마	藍色	長衣	草綠色						흰 거들지를 長衣에 대었다
女 子	" 2	삼회장 저고리	黃色·자주 회장										
	" 3	저고리	白色	치마	白色								

〈場面 5〉 최초의 벼슬길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考
男 子	主人公					官服	青玄色	帶		木靴			胸背가 없다
	倍行人 4人					帖裏	淡青色	條兒		갓신	行纏		절부채
	羅將 1					"	"	띠		"	半臂衣	黑色	朱杖을 메고 있다
	" 2					"	"	"		"	"	紅色	"
	引路					창옷	"	"	紅色	"	行纏		절부채
	급창					"	"			草履	"		
	馬夫 2人			바지	土黃色	"	土黃色	띠	黑色	"	"		
	草笠少年					"	淡青色	條兒		갓신	"		절부채
	어린이	저고리	紅色	바지	白色	"	"			"			

## 〈場面 6〉 장가 가는 날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男 子	主人公					冠服	紫赤色	帶		木靴			紗扇을 들고 있다
	倍行人 3人					帖裏	玉色	條兒		갓신			절부채
	馬夫 3人 등 초롱 든이 4人					黑衣	黑色			草履			
	雁夫					團領袍	"			木靴			木雁을 들고 있다
	引路					"	淡青色	條兒		갓신	行纏		절부채
	어린이 4人	저고리	紅色	바지	白色	창옷				"	주머니	紅色	
女 子	乳母	"	玉色	치마	青色	長衣	綠色			"	치마 허리띠	白色	白色거들지
	女人 1	삼회장 저고리	연 두 색 자주회장	"	藍色					"	"	"	
	處女	회장 저고리	연 미 색 자주회장	"	"					"			

## 〈場面 7〉 판서시임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男 子	主人公					戎服	藍色	條兒	紅色	木靴	兵符	紅色	韶軒
	倍行人 5人					帖裏	青色	"		갓신			절부채
	倍行人 1人					團領袍	"	"		"			"
	軍卒 7人					黑衣	黑色	띠	藍色	草履	行纏子	青色	
	馬夫 2人 교꾼 5人	저고리	白色	바지	白色	"	"			"	行纏		
	倍行人					戎服	青色	條兒		木靴			

## 〈場面 8〉 관찰사 행렬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男 子	主人公					戎服	藍色						雙轎
	馬上 倍行人					"	青色	條兒		木靴			
	馬夫 7人			바지	白色	창옷	"			草履	行纏		
	倍行人 5人			"	"	"	玉·白色			"	"		
	軍卒 7人 樂士 10人			"	"	黑衣	黑色	띠	藍色	"	行纏快子	紅色	
	軍卒 7人					"	"	"	"	"	行纏快子	玉色	旗·司命旗等
侍童				바지	白色	창옷	玉色			갓신	快子	黑色	
	引路					戎服	淡青色	條兒					箭筒

## 〈場面 9〉 회갑 잔치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男 子	主人公					道袍	藍色	條兒	紅色				
	子孫 男子4人					"	"	"					
	男子1人					"	青色	"					
	男子4人					"	玉色	"					
	私奴2人					창옷	素色			草履	주머니	藍色	
	少年3人	저고리	玉·白色	바지	白色					갓신			
女 子	婦人	삼회장 저고리	玉 色 자주회장	치마	藍色						치마하리	白色	
	女人 14人	"	초록색3人 자주회장		藍色 3人						"	"	
		"	분홍색3人 자주회장		보라 옥색2人						"	"	
		"	노랑색4人 자주회장		紅色 3人						"	"	
		"	玉色3人 자주회장		淡青色 2人						"	"	
	女人	저고리	玉色1人 자주회장							草履	"	"	
	6人	"	玉色							"	"	"	
	(奴婢)	삼회장 저고리	玉 色 자주회장							"	"	"	

## 〈場面 10〉 貴人행차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男 子	主人公					戎服	藍色	條兒	紅色	木靴			平轎子
	등초롱 든이6人					黑衣	黑色			草履	快子 行纏	黑色	
	횃불든이 2人					창옷	素色			"	"		
	引路人 2人					帖裹	淡青色	條兒		갓신	"		劄부채
	횃불든이 1人					"	"	"		"	"		
	倍行人 7人					"	"	"		"	"		劄부채
子	倍行人 1人					團領袍	"	"		"	"		"
	皂4人 皂2人					黑衣	黑色			草履	"		"

## 〈場面 11〉 回榜禮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主人公					冠服	青綠色	帶		木靴			平轎子

男	子孫 1				冠服	淡紅色	帶		木靴			軺 軒
	" 2				"	"	"		"			馬上
	" 3				道袍	淡青色	條兒		갓신			"
子	倍行人 14人				帖裹	"	"		"			劄부채
	書吏1人				團領袍	淡紅色	"		"			"
	교꾼11人	저고리	白色	바지	白色	黑衣	黑色	띠	白色	草履	行纏	
	樂工8人				公服	紅色	帶	草綠色	갓신	"		

〈場面 12〉回婚禮

	種類 人物	上衣	色	下衣	色	外衣	色	帶	色	履	其他	色	備 考
男	主人公					冠服	淡紅色	帶		木靴			
	子孫16人					道袍	藍色4人 淡青色12人	條兒	紅色 기타				
	少年5人	저고리	紅色2人 白色1人 淡青色2人	바지	素色					草履	주머니		
女	婦人			치마	紅色	圓衫	紅色	大帶	藍色				
	女人 13人	삼회장 저고리	노랑색 자주회장	"	藍色· 紅色3人 淡青色3人						치마허리		
		저고리	자주색	"	淡青色1人 藍色2人						"		
子	奴婢	삼회장 저고리	연미색	"	藍色1人					草履	"		앞치마
	女人 7人	회 장 저고리	白色 淡青色	"	玉·青色						"		"
		저고리	"	"	藍·淡青色						"		"



〈場面 1〉 돌잔치



〈場面 2〉 글공부



〈場面 3〉 과거보기



〈場面 5〉 최초의 벼슬길



〈場面 4〉 장원급제



〈場面 6〉 장가 가는날



〈場面 7〉 판서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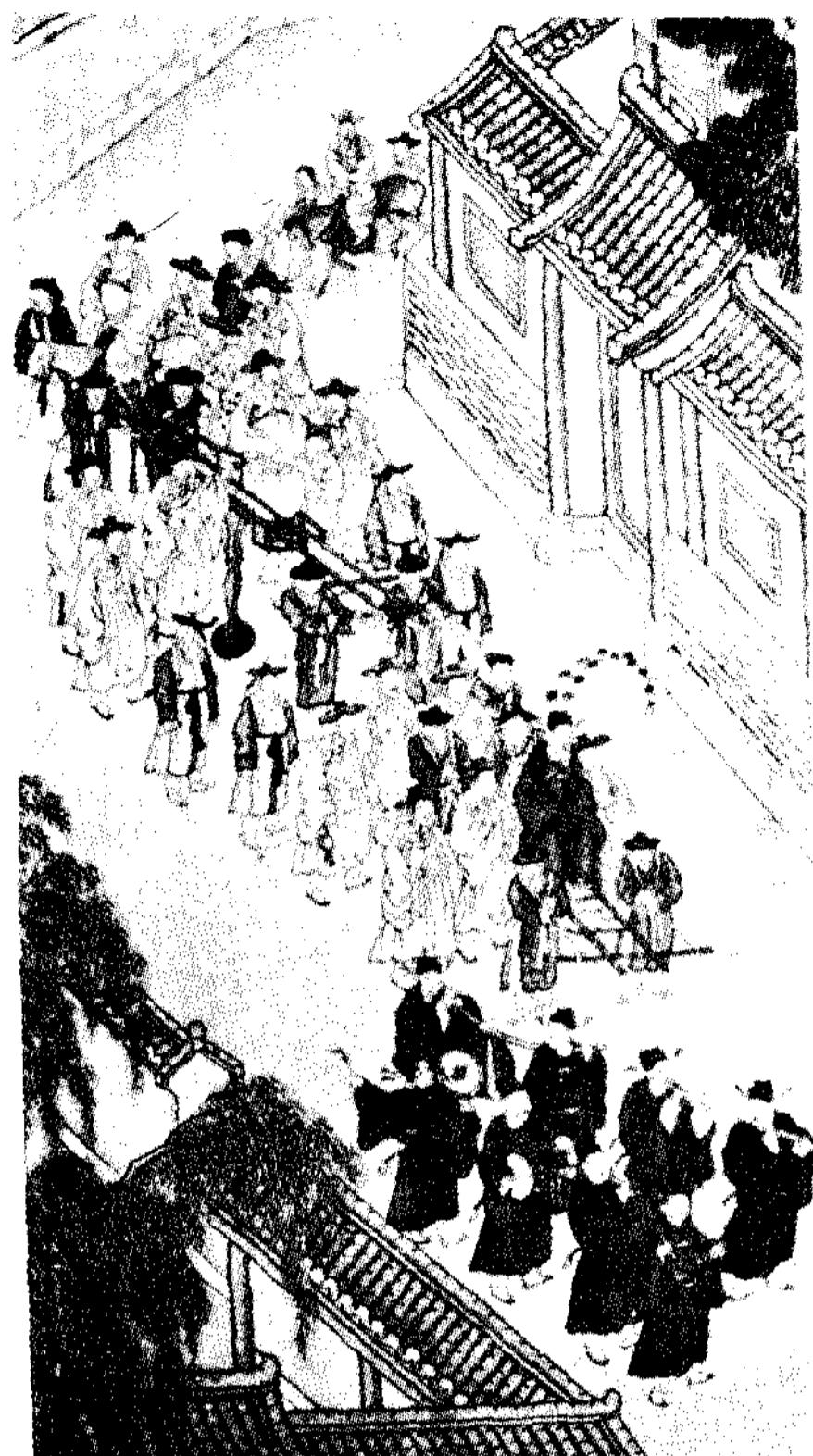
〈場面 9〉 回甲잔치



〈場面 8〉 관찰사 행렬



〈場面10〉 貴人행차



〈場面11〉回榜禮



〈場面12〉回婚禮

## 2. 各身分에 따른 服飾

### (1) 冠 服

조선왕조 시대의 官品에 따른 冠服制度는 고려말 아래로 중국의 明制를 이어 받아 成宗代에 와서 「經國大典」에 의해 일단 정비가 되었으나, 그 후에 내린 教旨·條例 등을 통해 수정이 되며 國末까지 습용되어 왔다. 이 중 朝服·祭服은 별 변동이 없으나, 公服·常服에 있어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라 혼란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상시복이기에 어쩔 수 없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현상으로 짐작되며, 이에 반해 正服인 朝服·祭服은 大祀·慶祝日·元旦·冬至·詔勅을 分布, 進表時, 宗廟, 社稷에 祭祀 陪祀時 등 큰 의식이 있을 때에만 착용했기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으로 짐작된다.

「經國大典」에 보면 品職에 따른 冠服은,

一品. [服]公服紅袍 常服紗羅綾段胸背 [帶]朝服犀祭服公服常服同 [靴·鞋]公服黑皮靴 常服挾金靴

二品. [服]公服紅袍 常服紗羅綾段胸背 [帶]朝服正鍛金從素金祭服常服同 公服荔枝金 [靴·鞋]公服黑皮靴 常服挾金鞋

三品. [服]公服正紅袍從青袍 常服堂上官紗羅綾段胸背 [帶]朝服正銻銀從素銀祭服常服同 公服正荔枝金從黑角 [靴·鞋]公服黑皮靴 常服堂上官挾金靴

四品. [服]公服青袍 [帶]朝服素銀祭服常服同 公服黑角 [靴·鞋]公服黑皮靴

五·六品. [服]公服青袍 [帶]朝服黑角祭服公服常服同 [靴·鞋]公服黑皮靴

七·八·九品. [服]公服綠袍 [帶]朝服黑角祭服公服常服同 [靴·鞋]公服黑皮靴(君三, 禮典, 儀章)

이와 같이 公服에는 帼頭·袍·帶·黑皮靴를 갖춰 입으며, 常服에는 紗帽·袍·帶·黑皮靴를 갖추며, 三品 이상은 袍에 胸背를 달고 있음이 公服과 다른 점이나, 「燕山君日記」에 의하면 “듣건대, 중국 朝土의 時服은 品階官秩에 관계없이 모두 胸背를 붙인다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제도는 모두 중국 제도를 쫓으니 앞으로 東·西班牙一品에서 九品까지 모두 흉배를 달되, 鮑지·사슴·거위·기러기 등으로 그 官秩을 정하게 하다.”<sup>1</sup> 하여 時服, 즉 常服에 흉배를 모두 달았으나 그 후 英祖代에 편찬된 「續大典」에 의하면 “大典(經國大典)에 있는 堂上官 이상의 흉배는 이제 와는 다르다. 堂下 三品에서 參外官은 青綠色公服을 입으며 常服에는 흉배가 없다.”<sup>2</sup> 하여 다시금 「經國大典」의 제도에 따르고 있다.

〈場面 5〉에서 보이는 최초의 벼슬길의 주인공은 紗帽에 흉배가 없는 青綠袍를 입고, 帶·黑皮靴를 착용하고 있어 「經國大典」과 일치한 복장을 하고 있다.

〈場面 4〉의 장원급제, 〈場面 11〉의 回榜禮의 주인공은 帼頭에 青綠袍를 입고 笏을 들고 带·黑皮靴를 착용하고 있으나 이를 文武唱榜 때 입던 軟巾襯衫의 제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堂下官의 公服인 青綠袍를 착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겠다.

服色에 있어서는 宣祖 32년에 黑團領制度를 정하였으나, 英祖 33년에 전교하기를 “堂下官이 緑袍를 입는 것은 바로 壬辰年(宣祖 25년) 후에 만든 것인데 近世에는 시속에서 鮮紅色을 힘써서 허비하는 비용이 많으니 이는 사치를 송상하는 한 단서이다. 이제부터는 堂下官은 青綠袍로 하여 일체 「經國大典」에 따르라.” 하였으나 「續大典」에 의하면,

堂上三品以上 [冠]烏紗帽 [服]淡紅色 (大小朝儀玄綠色紗綵胸背雲鶴武臣胸背同大典)

堂下三品以下 [冠]烏紗帽 [服]紅袍 (大小朝

儀玄綠色紗綵胸背白鶴武臣胸背與大典武臣堂上同)  
(君二, 禮典, 儀章)

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를 다시금 정비하였으며, 大小朝儀 때 착용한 袍는 公服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場面 4〉와 〈場面 11〉의 主人公의 服色과도 일치하고 있다고 하겠다. 〈場面 3〉의 과거보기의 試官과 〈場面 11〉의 回榜禮의 軺軒과 말을 탄 자손은 淡紅色, 帶·黑皮靴를 착용하고 있다. 文宗即位年 10月丙子에 보면 文科時 試官의 衣服은 「前三刻 讀卷官對讀官 以時服 俱集朝堂」이라 하여 時服을 着用한다 하였다. 時服은 常服과 같은 紗帽·紅團領에 흉배를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sup>3</sup> 규정하고 있으나, 「芝峰類說」과 「燃藜室記述」에서는<sup>4</sup> 서로 상반되는 혼란된 기록으로 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지울 수 없으나 〈場面 3〉의 試官은 「續大典」에 따르는 淡紅袍에 흉배를 부착하지 않은 時服차림을 하고 있다.

## (2) 戎 服

「芝峰類說」에 依하면 帖裏, 즉 戎服이라 하였다. 戎服은 文·武官 모두 몸을 경건하게 해야 할 경우의 복장으로서 笠·慶多繪·木靴를 갖추어서 입었다.

「燃藜室記述」에 보면 “戎服의 帖裏는 곧 衿褶이다. (筆苑雜記) 지금은 天翼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帖裏 제도는 深衣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中古 시대에는 많은 文士들의 便服으로 되어 대개 평상시에 입는 옷이 되었다. 그리고, 朝服의 中衣는 지금에 와서는 戎服으로만 사용되어 武士이거나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면 입지 않는다.”<sup>5</sup>하였다. 그리고 「增補文獻備考」에는 “柳馨遠이 말하기를 ‘舊例에는 公服 안에 반드시 帖裏를 입고 있었다. 속칭 固道帖裏인데, 바로 戎服이다. 때로 혹시 疊鼓나 疊鍾이 있으면百官들이 즉시 任地에서 列을 지어 公服만 벗

1. 燕山君日記, 11年 11月, 甲辰, 「傳曰 聞中國朝土服 不拘品秩 皆用胸背 我國凡制度 皆從革制 今後東西班牙自一品至九品 皆用胸背 以猪鹿鵝鷹之類 定其品秩」.
2. 「大典堂上官以上胸背與今判 堂下三品至參外官則只有青綠色 公服而無常服與胸背」(禮典, 儀章).
3.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pp. 335~336.
4. 「黑團領 日時服 紅團領 日常服」(芝峰類說, 卷 19, 服用部 朝章), 「時服黑團領 常服紅團領」(熱葉至記述 別集, 卷 13, 冠服).
5. 「我服帖裏 即衿褶也(筆苑雜記今俗呼爲天翼) 我東帖裏之制 最近於深衣 故中古多爲文士便服 盖爲燕服之上服 而朝服之中衣 至于今日 專爲戎服 非武士及 臨陳則不服」(別集 卷六十三, 政教典故).

으면 다시 입기를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이것이 戎服이 되었다.”<sup>6</sup>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經國大典」에도 士庶人の 帖裏制度에 대해 언급하듯이, 애초에 帖裏는 사대부의 便服이고 表衣로 착용되었고, 公服 안에 中衣로, 후에는 戎服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본다. 또한, “宣祖 32年에…壬辰年·癸巳年の倭亂 이후로는 창졸간에 威儀를 갖출 수가 없어서 사대부가 모두 帖裏를 입었었는데, 戊戌年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난리 이후로 大小朝官이 모두 戎服을 착용한 것이 이제 7년이 되어 상하의 분별이 없으니, 明나라 사람이, 그것이 본래 이와 같았다 이르며 조소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명년 2월부터 시작하여 일제히 冠帶를 평상시의 법대로 칙복하라.’”<sup>7</sup>라고 한 것을 보면 國亂때에는 公服으로 常時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續大典」에서는,

堂上三品以上 [冠]戎服紫笠具纓 [服]戎服藍色帖裏

堂下三品以下 [冠]戎服黑笠晶纓 [服]戎服青玄色帖裏(郊外動駕時則紅色帖裏)

라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經國大典」에서는 없는 戎服 제도 규정이 생겼음을 볼 수 있다. 〈場面 7〉의 판서시임과 〈場面 8〉의 관찰사 행렬의 주인공의 복식은 戎服의 차림이지만, 袍에 있어서는 상하가 따로 분리되고 下裳에 주름이 잡힌 帖裏와는 형태가 다른 直領袍인 藍色道袍를 입고 紅條兒에 긴 끈으로 늘인 紅色 兵符를 차고 있다. 이는 「續大典」제도와는 다른 것으로 당시 朝官의 常服이었던 道袍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3) 儒生·士人服

儒生의 服制에 대해서는 李德懋의 「青莊館全書」에 의하면 太宗朝에 成均館과 五部儒生들이 처음으로 青袴를 입었는데 이것은 조정의 制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明制에 따른 것이다. 그 후 다시금 成宗 8년에 “예조에서 傳旨하기를 ‘금후로는 成均館 四學의 儒生은 서울의 길거리에서는 青衿團領을 착용토록 하라.’”<sup>8</sup> 하였으나 그 해에 다시금 儒生의 服色을 논하자, “領事 金國光이 대답하기를 ‘先王朝에서도 일찌기 이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유생으로 하여금 다른 服飾을 입게 한다면 유생으로서 성균관에 居하는 자가 적어질 것입니다.’”<sup>9</sup>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생이 유복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이것은 聖人의 道를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만약 유생들로 하여금 그 복식을 따르게 하려면 장차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知事 李克培가 답하기를 ‘유생은 길에서는 갓을 쓰고 青衿을 입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좋다.’ 하였다.”<sup>10</sup> 이와 같이 明制인 儒服은 그 시행령에 따라 착용이 안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經國大典」에서 보면 諸學生徒의 冠은 緺布巾(在學), 服은 團領(儒學用青衿), 帶는 條兒로 제도화시켰으나 다시금 유생의 巾服이 거론되고 있다. 中宗 11년에 “禮曹判書 申用灝가 아뢰길, ‘중국의 유생은 길을 다닐 때에도 두건을 쓰는데, 우리 나라의 士習은 한결같이 경박해졌으니, 중국의 예에 따라 길에서도 두건을 쓰되, 어기는 자는 유류에 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유생은 다들 團領을 안 입고 다니는데 이는 書吏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나, 이 것도 옳지 않습니다.’”<sup>11</sup>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儒生과 여느 사람은 구별되어야 하니 길을 다닐 때에 쓰는 유관은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青衿도 입어야 한다.’”<sup>12</sup> 하니 실제적으로는 青衿조차도 안 입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芝峰類說」에는 “유생은 평시에는 연장자라

6. 「柳馨遠 曰 舊例公服裏 必着帖裏 俗稱固道帖裏 乃戎服也 時或疊鼓疊鍾 則百官即列信切 脫公服 則不待更着 而便是戎服也」(卷之七十九, 禮考二十六, 章服).
7. 「宣祖三十三年…壬辰倭亂以後 倉卒不能備威儀 士大夫皆着帖裏 戊戌 上下教日亂雜以後 大小朝官 皆用戎服 七年千茲 上下無別 天朝人謂其本來如此 嘲笑不已 自明年二月爲始 一齊冠帶以復平常時之規(增補文獻備考, 卷六七十九, 禮考二十六, 章服).
8. 成宗實錄, 8年, 10月 「傳旨禮曹 曰 今後 成均館四學儒生 於京城街路 着青袴團領」.
9. 成宗實錄, 8年, 10月 「領事金國光對曰 先王朝 嘗欲行之而未果 今使儒生 服異服 則儒生居館官者少矣. 上曰 儒生恥儒服 則是恥學聖人之道也 有立志者 必不恥之 如欲使儒生 異其服飾 將何如而可 知事李克培 對曰 儒生 於路上 載笠服青衿何如 上曰可」.
10. 「用灝曰 中原儒生 則其行路 亦着頭巾矣. 我國土習 一致偷薄 依中原例 於行路亦着頭巾 而違者 不齒於儒類 何如 且儒生 皆不着團領而行 此惡其有類於書吏也 此亦不可 上曰 儒生與常所當辨別 其行路着儒冠 雖不必同於中原 青衿則固可爲也(中宗 11年, 5月 戊子).」

도 行纏을 차고 直領衣를 입는데 지금은 나이 젊은 자들도 다 道袍를 입고 행전을 벗어 버린 채 分套을 입는다.”<sup>11</sup>라고 하였고, 京都雜志에는 “儒者는 道袍를 입는다. 朝官의 常服도 역시 이것을 입는다.”<sup>12</sup>라고 하고,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우리 나라 朝官·선비·平民이 항상 웃옷으로 도포를 입는데…… 儒生은 그것을 公服으로도 쓰고 祭服으로도 쓴다.”<sup>13</sup>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실제 착용에 있어서는 道袍가 일반적인 常服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舉時 服色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데, 「文宗實錄」에 “文科時…… 舉人具白衣黑頭巾”(即位年 10月)이라 하였고 「肅宗實錄」에 “儒生들이 例로 紅團領을 입으나 試때는 黑團領을 입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白團領·黑團領을 입어서 뒤섞이어 불품이 없으니, 지금 이후로는 엄히 신칙하여 흑단령을 입게 하되, 위반한 자는 입장을 허락치 마소서.”하니 임금이 윤허하였으나 그 후 學者의 服色은 사회 변화에 따라 戎服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仁祖 7년에 “호란을 겪고 나서 선비들이 성균관에 있을 때는 종전대로 巾服을 착용하다가 과장을 출입할 때면 다 戎服을 입었으므로…… 선비는 조관과는 차이가 있으니 入仕한 자 아니면 戎服 착용을 금하고 과장에 들어올 때도 서졸들과 구별이 없다면, 규제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 成均館에서 巾服을 착용한 이상 크고 작은 과장에 올 때도 모두 巾服을 착용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그 전같이 巾服을 착용케 하였다.”<sup>14</sup>라고 하였고 「燃藜室記述」에 보면 “宣祖 庚子 禮曹啓曰 別試·講經 때를 위시해서 유생들은 모두 두건을 쓰게 하여 차츰 의복을 곱게 꾸미도록 하소서.”<sup>15</sup>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巾은 儒巾을 쓰도록 하고 青衿制度는

실현을 못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英祖代<sup>16</sup>에 와서 青衿은 紲衫과 그 제도가 같은 것으로 樣頭와 함께 生員·進士 唱榜에 착용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場面 3〉의 과거를 보는 여러 유생들은 淡青이나 青色 道袍를 착용하고 條兒를 띠고 있으며 儒을 쓰고 있다.

도포에 관하여는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우리 나라에서는 도복을 웃옷으로 생각하는데 도포는 道服이다. 다만 뒤에 별도의 垂幅이 있어서 두 옷자락을 가리게 된 것이 곧 갓옷의 옷자락을 포개는 것과 같으니, 그렇다면 이름이 도포이지 실은 갓옷이다.”<sup>17</sup>라고 하였고 「皇湖僕說」에는 “예전 道服은 우리 나라 풍속에서 이르는 도포인데 후세에 와서 제사 때 입는 옷으로 정해졌다.…… 지금 사대부 평상시에 입는 옷은 모두 道袍를 사용하고……”<sup>18</sup>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보면 도포는 道服에서 유래되었고 그의 생긴 형태를 미루어 보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역시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우리 나라의 朝官·선비·평민이 웃옷으로 항상 도포를 입는데 青·白의 두 색이 있다. 吉服은 청색으로 하고 평상복은 백색으로 하며 또 귀천의 구별이 있어 천한 자는 도포를 입지 못한다.”<sup>19</sup>라고 하는데, 도포는 燕居服·常服·祭服으로 두루 입혀졌음을 알 수 있다. 國初에 「經國大典」에 보면 士庶인이 帖裏를 입는 제도가 있는 바 언제부터 인가 이는 戎服과 庶人在官者の 公服이 되고 도포가 士族의 上服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場面 1〉의 돌잔치에 있어 曾祖父는 玉色袍, 祖父는 藍色袍에 紅條兒, 父는 青袍·條兒를 하고 있다. 모두 吉服色인 청색계통의 도포를 착용하고 있다. 〈場面 2〉의 글공부에는 접장·훈

11. 「儒生 平時 雖長者 着行纏穿直領衣 今則少者皆着道袍去行纏穿分套」(卷三, 君道部 法).

12. 「儒生 道袍 朝士常服亦用之」(卷六一, 風俗巾服).

13. 「我東朝官士庶 常服上衣用道袍…儒以此爲公服」以此爲祭服.

14. 「自經胡變以來 士子居洋時則依前巾服 而出入科場則皆着戎服… 而士子則興朝官有異 非入仕者不得着戎服 且於入場之時 與胥卒混雜 恐有妨禁制 居齋之士 既着巾服 則大小試場 並合巾服無」(仁祖 7年, 2月, 庚辰).

15. 「別試講經爲始 儒生皆着頭巾 以爲·飾衣章之漸」.

16. 英祖實錄, 卷六十三, 二十二年, 9月條,

17. 「東俗 以道袍爲上服 道袍者 道服也 但後別有垂幅 以掩裾之制 便與裘制交掩合 是各道袍而實裘也」(卷四十五, 道袍辨證說).

18. 「古之道服 東俗所謂道袍也 此亦後也實祭之服 今也士大夫燕服 皆用道袍」(卷 六五, 萬物門).

19. 「我東朝官士庶 常服上衣用道袍 有青白二色 吉服常青 常服尚白 亦貴賤之分 賤者不得着袍(卷 四十五, 道袍辨證說).

장의 袍는 옥색도포이며, 〈場面 3〉의 과거보기는, 學者들은 청색도포에 條兒를 띠고, 〈場面 9〉의 회갑잔치는 주인공은 짙은 감색도포에 紅條兒, 자손들도 모두 吉服色인 藍·青·玉色道袍에 條兒를 띠고 머리를 땋은 소년들도 모두 도포를 입어 집안 大事의 禮裝을 갖추고 있으며, 〈場面 12〉의 回婚禮에 있어서도 자손들 모두가 吉服色인 藍·青·玉色 도포를 입고 條兒를 띠고 있다.

#### (4) 中·庶人服

吏校는 吏胥와 軍校를 級稱하는 것으로 官僚階級과 평민계급의 중간에 존재하여 집권기구의 말단을 담당하는 僚屬이다. 中央各司의 吏胥를 「京衙前」이라 하여 錄事·書吏가 있어 錄事는 議政府·六曹·中樞府·敦寧府·忠勲府·義賓府·耆老所 등 주요관아에, 書吏는 각사에 모두 두었다. 京吏는 高麗代에는 士人 또는 良家子弟에서 충당하여 조선초기에는 양반의 하류와 비등한 지위에 있었으나 점차 그 지위가 저하되었다. 지방관부의 吏胥는 鄉吏 또는 外衙前이라 하여 본래는 지방의 豪族으로서 고려 때부터 지방토착세력을 懷柔抑制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였다. 衙前의 下人에는 使令·羅將 등이 있어 公私賤에서 葛立하는 수도 있었다. 그러나 중앙의 승정원 使令과 의금부 羅將만은 이서와 대등한 지위였다. 향리 중 驛吏는 특수한 것으로 奴婢從母法의 적용을 받았고 驛卒·驛保 등은 일반 軍卒이나 保人에 비해 낮았다. 軍校는 중앙에서는 궁중의 使役에 임하는 披隸, 各 軍營의 营門所屬이, 지방에서는 將校가 여기에 해당된다. 장교는 鄉吏와 아울러 吏校로 連稱하는 것이 상례였다.

일반 民庶는 백성, 상사람으로 百姓·鄉人の 轉訛이다. 백성에는 良人·賤人的 신분상 구별이 있어 천인은 천역을, 양인은 양역을 담당하게 되어 良人으로 賤役을 담당하는 수도 많아 이것을 身良役賤이라 한다. 양인은 보통 農·工·商에 종사하는 생산계급이고, 身良役賤은 초기에는

千이나 尺으로 불렀고 뒤에는 皂隸·羅將·日守·漕卒·水軍·烽軍·驛保를 담당하여 이는 七般賤役으로 가장 고역으로 여겨 누구나 기피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비록 양인의 신분이었으나 천인과 다름없는 사회적 지위에 있었다. 천인은 천역에 종사하는 최하급의 特수계층으로 公·私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公賤은 有罪沒入 또는 屬公 등으로 官府에 속한 노비를 주로 하는 것이나, 寺奴婢(中央 各司에 속한 노비)·內奴婢(內需司에 속한 노비)·官奴婢(京外·各官府에 속한 노비). 그 중 監·兵營 소속을 營奴婢라 함.)·驛奴婢 등으로 구별된다. 私賤 또는 私奴婢는 買得, 기타로 私人에게 소유되는 노비로 私奴婢(班奴婢)·院奴婢(書院所屬)·校奴婢(鄉校所屬) 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그 소속하는 官衙나 奴主에 대하여 일신의 일생뿐 아니라 세습으로 服役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 苦役을 면하여 도망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히 탐색·처벌하였다. 천인에는 이 公·私賤 외에 白丁·巫覡·才人·娼妓 등과 불교의 쇠퇴와 함께 僧尼도 천시되었다. 才人은 聲樂·雜技를 業으로 하는 倡優로 廣大라고도 하며 禾尺·才人으로 連稱되었으나 禾尺은 衣服 등에 준엄한 제한이 있는데 대하여 才人은 그보다는 매우 완화된 대우를 받았다.<sup>20</sup>

#### 가. 吏胥服

「世宗實錄」에 보면 “各司의 吏典 諸員은 대개가 다 鄉校의 儒士이므로 본래 團領을 입는 자 이옵고 屬吏典은 입을 수 없으나 去官하여 벼슬을 받으면 또 입게 되오니 한 몸으로 혹 입기도 하고 못 입기도 함은 실로 웃지 못합니다. 또 이들은 본시 良民으로서 벼슬길에 통한 자들이오니 圓領을 입도록 허락함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길, 吏典은 마땅히 圓領을 입고……(생략)”<sup>21</sup> 라 하여 吏屬들의 圓領, 즉 團領착용을 허락하고 있다.

「經國大典」에도 錄事의 冠은 平頂巾에 角이 있고, 服은 團領, 帶는 條兒를 하였고, 書吏는 冠은 平頂巾에 角이 없으며, 服은 團領, 带는 條

20. 韓國史,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pp. 311~323.

21. 「各司吏典諸員 率皆鄉校儒生 本着圓領者也 屬吏典 則不得着 去官受職則又着 去官受職 則又着 以一身 或着或 實爲末使 且此人本是良民 通任路者也 許着圓領何害乎…上曰 吏典當着圓領…」(世宗 30年, 10月, 壬午).

兒이고, 「續大典」에는 錄事의 冠은 烏紗帽, 服은 紅團領(大小朝儀 青玄色)으로 錄事와 書吏의 服飾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場面 3〉의 과거보는 과장에서의 書吏 6인은 青團領袍에 條兒를 띠고 舉者들이 쓰는 儒巾과는 형태가 좀 다른 平頂巾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經國大典」에서 보이는 書吏服色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場面 11〉의 回榜禮의 倍行人은 青色團領袍에 條兒를 띠고 있으나 冠은 便服에 쓰는 갓을 쓰고 있어 문헌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 나. 羅將·皂隸·軍卒服

宮中 및 各司의 羅將·皂隸의 服色에 있어서의 「太宗實錄」에 “丁吏를 파하다. 舊制에 兩府와 諫院의 행사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붉은 옷을 입고 喝道하는 것을 丁吏라 일컫는다. 이조 판서 韓尚敬이 아뢰기를 ‘이제 조정의 법을 본따서 이미 皂隸로서 呵喝하게 하니 丁吏를 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다.”<sup>22</sup>라고 하였으며, 同王 17년에 “司諫院에서 皂隸를 喝道로 개칭하길 청하여 아뢰길 ‘전에는 司憲府의 喝道와 司諫院의 丁吏와 引卒의 복색이 특수하게 달랐는데 지금은 丁吏를 고쳐 조례에 두어서 各司와 구별이 없고 일반의 보는 것 이 혼동이 되어 길가는 사람이 혹 馬을 범하여 왕명을 육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청컨대 司憲府의 예에 의하여 烏巾·革帶·淡朱色 옷을 쓰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르다.”<sup>23</sup>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丁吏로 불리우다가 喝道·皂隸로 개칭되었고, 司憲府에서는 羅將이라 불리었다. 이들의 복색도 처음에는 붉은 옷이라 하였으나 다시금 烏巾·淡朱色 옷을 착용했다 하나, 「經國大典」에 보면 羅將의 服은 青半臂衣, 帶는 條兒이고, 皂隸의 服은 青團領, 带는 條兒로서 앞서 밝힌 바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青半臂衣는 褙襪 또는 快子라 불리우며

帖裏 위에 덧입었다.

〈場面 5〉의 최초의 벼슬길의 羅將은 黑色·朱色 半臂衣를 입고 갓신을 신었으며 안에는 소매가 넓은 青色帖裏를 입고 條兒를 띠고 있으나, 〈場面 11〉에 回榜禮의 蓋를 든 나장은 朱衣를 입고 烏巾을 쓰고 있어 國初의 喝道의 복색과 일치하고 있어 혼동을 가져오나, 回榜禮는 특수한 행사로 임금이 하사한 인원으로 禮를 치루기 때문에 이에 儀章에도 규모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場面 6〉의 장가가는 날의 引路는 青團領袍를 입고 條兒를 띠고 있다.

皂隸에는 使命·馬夫·교꾼·引導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太宗實錄」에 보면 “公衙의 丘從 官奴를 쓰되 州·府·郡의 차등을 보아 수를 정하고 檢校의 合坐하는 것과 站夫하는 일은 예전대로 하고……”<sup>24</sup>

〈場面 4〉 장원급제, 〈場面 6〉 장가가는 날, 〈場面 7〉 판서이임, 〈場面 10〉 貴人행차, 〈場面 11〉 回榜禮의 마부·교꾼은 모두 소매통이 좁고 짧으며, 길이가 짧고, 양 옆자락이 트인 창옷 형태의 黑衣를 입었으며 行纏을 무릎까지 치고 있다.

〈場面 5〉 최초의 벼슬길의 마부 2인은 素色 창옷을 입고 행전을 치고 있어 격이 낮은 官奴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場面 8〉 관찰사 행렬의 마부는 청색 창옷을 입고 있다.

군졸들의 복색에 대하여는 成宗 22년에 “병사들은 모두 안에 狹袖衣 黑衣를 입고 快子의 色은 모두 方位色에 따른 掛子를 입었으며……”라 하였고, 「大明會典」에는 “軍士의 옷소매는 겨우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한다.”고 하고, “軍士가 입는 의복은 알려온 바에 따라 고찰하면 모름지기 길이가 짧고 소매는 좁게 만들어야 한다.”<sup>25</sup>

이와 같이 각 장면의 시위군사들은 안에 狹袖衣 黑衣에 快子色이 青, 朱 등으로 각기 다르고

22. 「罷丁吏 舊制 兩府及諫院之行 今一人 朱衣喝道 謂之丁吏 吏曹判書韓尚敬啓曰 今倣朝廷之法 既以皂隸前呵 宜罷丁吏 從之」(太宗實錄, 14年, 4月, 丁卯).

23. 「司諫院 請皂隸改稱喝道 啓曰 前此司憲府喝道 司諫院丁吏 引卒服色殊別 今革丁吏乃置皂隸 與各司無別 謙視混濁 行路人或有犯馬辱命者 請依司憲府例 汶稱喝道 其冠帶依丁吏例 用烏巾革帶淡朱色衣 從之」(太宗實錄, 17年, 11月, 壬子).

24. 「衙丘從用官奴 視洲府郡等差定數 檢校合坐站夫依舊…」(太宗, 12年, 6月, 丁卯).

25. 「軍士所着衣服 知會考察 須令體短袖窄甲赤古里」(成宗 22年, 9月, 丁卯).

戰帶를 차고 있다. 이는 당시에 유행하던 廣袖風에서 벗어나고 윗옷의 폭이 좁고, 快子를 덧입어 그 위에 戰帶로 정리해 줄은 軍服의 기능성에 그 중점을 둔 것 같다. 각 장면마다 시위 군사의 수와 복색에 차이가 있음은 品職의 차등으로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 다. 鄉吏服

鄉吏는 그 직분의 성격으로 보아 관원과 민간인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복식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國服을 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世宗實錄」에 보면 “地方의 鄉吏는 直領을 입고 서울안 上林園 別監·僚仗·隊副·武士·庶人과 지방의 日守·兩班·工·商·賤隸 등은 공통으로 直領腋注音 帖裏를 입는다.”<sup>26</sup> 하였고, 「經國大典」에는 다음과 같다.

鄉吏 . [服] 公服綠袍 常服直領 [帶] 常服條兒  
[靴·鞋] 公服黑皮鞋 常服皮鞋

이와 같이 常服으로는 直領袍를 착용하였으나 그 후 「五洲衍文長箋散稿」에 “철릭은 또한 지금의 이른바 天翼인데 朝士·武弁을 막론하고 戎服이라 하여 公務時에만 입고 奴婢로서 役에 있는 자는 항상 그것을 上服으로 입고 있어 이렇게 士庶가 통용하고 있어……”<sup>27</sup> 이같이 帖裏는 후에 中·庶인의 공복처럼 상시 착용하였다. 〈場面 4〉·〈場面 5〉·〈場面 7〉·〈場面 8〉·〈場面 9〉·〈場面 10〉의 배행인은 모두 青帖裏에 條兒를 띠고 갓신을 신었으며 손에 부채를 모두 쥐고 있다.

#### 라. 樂人服

樂人の 복색은 「世宗實錄」에 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懸樂의 여러 악공의 옷은 五升의 굵은 베에 붉게 물들여 옷을 만들었다.”<sup>28</sup> 또한 “문무를 추는 사람과 악기를 잡는 사람의 가죽띠를 사용하고…… 云云”<sup>29</sup> 同王 14년에 “악학에서 아뢰기를 雅樂署 典樂의 관복과 典樂署 典樂이 관

복에 차등이 없음은 옳지 못하오니 청컨대 副典樂의 관복은 붉은 公服과 檃頭를 쓰고 비백색 大帶와 金銅으로 장식한 혁대를 띠고 검은 가죽신을 신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다.”<sup>30</sup> 하니 〈場面 11〉 回榜禮는 宮에서 나온 樂人們이기에 樂工의 복색인 붉은 公복에 檃頭, 綠色 大帶를 하고 검은 갓신을 신고 있다. 〈場面 4〉 장원급제의 樂工은 皂隸의 公복인 帖裏에 草履를 신고 있다. 〈場面 8〉 관찰사 행렬의 樂人은 군졸로 구성되므로 군복인 狹袖黑衣에 붉은 快子를 입고 草履를 신고 있다.

#### 마. 廣大·奴婢의 服

廣大的 복식에 있어서는 신분에 따른 엄격한 服飾禁制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분의 성격으로 보아 다채로운 의복을 착용하였다. 「京都雜志」에 보면 “進士에 급제하여 放榜을 하면 遊街를 하는데 細樂手·廣大·才人을 대동한다. 廣大는 요사이의 배우로 비단옷에 누른 초립을 쓰고 비단조각으로 만든 가화를 꽂고 孔雀羽을 들고 어지러이 춤추며 익살을 부린다.”<sup>31</sup> 〈場面 4〉 장원급제의 광대는 붉은 옷에 소매가 넓고 긴 한삼을 各色으로 달았으며 색동을 대었고 앞·뒤·양 어깨에 흥배를 달고, 색색으로 다래를 늘었으며, 화려한 孔雀羽를 들었으며 천인의 신분으로는 엄두도 못 낼 갓신을 신었다.

私奴 및 서민의 복식은 〈場面 9〉 회갑잔치, 〈場面 12〉 回婚禮의 私奴들 모두 素色 창옷으로 袍의 길이가 짧고, 소매폭도 좁고 짧으며, 안에는 素色 바지·저고리를 입고, 무릎까지 행전을 치고 띠를 두르지 못하고 袍의 앞자락을 뒤로 매어 주었다. 草履를 신고 있다. 私奴男兒는 바지·저고리 차림에 袍를 입지 않고 있다. 머리를 땋지 않은 어린이는 모두 素色 바지에 붉은 색 저고리를 입고 있어, 붉은 색의 주술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26. 「外方鄉吏 着直領 京中上林園別監 僚仗隊副 武士庶人 外方日守兩班 工商賤隸 通着直領眼注音帖裏」(世宗 31年 1月 丙午).

27. 「按帖裏 即今所謂天翼也 毋論朝士與武弁 稱以戎服 只着於公 皂隸在役者 常着以爲上服者也 士庶通用」(卷 四十五, 道袍辨證說).

28. 世宗實錄 12年, 2月, 庚寅.

29. 世宗實錄 14年 5月, 乙未.

30. 「樂學啓 雅樂署典樂冠服與典樂署典樂冠服無等未便 請副典樂冠服 用絳公服幘頭緋白大帶金銅草帶 烏皮履 從之」(世宗 14年, 12月, 甲辰).

31. 「進士及弟 放榜遊街 帶細樂手廣大才人 廣大者 倡優也 錦衣黃草笠 插綵花 孔雀羽 亂舞誣灰調」(卷 六一, 風俗遊街).

## (5) 婦女子服

「增補文獻備考」에 보면 英祖 때의 實學者 李灝이 말하기 “오늘날의 부녀들이 입는 좁은 소매 옷과 짧은 적삼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귀천이 통용하니, 더욱 놀랍고 괴이한 것은 사람들이 익하고 보고 해서 상례로 삼는 것이다. 또 더울 때는 홀적삼을 입는데 아래서 오무려서 훠매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걷어서 치마 말기도 가릴 수가 없으니 더욱 괴이하고 잘 못된 것이다. 이 의복은 요사스러운 것이니 마땅히 못 입도록 금하여 아주 없애야 한다.”<sup>32</sup> 라 하니 귀천을 막론하고 저고리의 소매가 좁고 길이가 짧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이야기 한 雅亭 李德懋의 「青莊館全書」에 보면 “지금 세상의 부녀자들의 옷은 저고리는 너무 짧고 좁으며, 치마는 너무 길고 넓으니 의복이 요사스럽다. 옷깃을 좁게 깎은 적삼이나 폭을 팽팽하게 불인 치마는 의복이 요사스럽다.…… 일찌기 어른들의 말을 들으니 옛날에는 여자의 옷을 넉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집을 때 입었던 옷을 소렴할 때 쓸 수 있었다 한다.…… 새로 생긴 옷을 시험삼아 입어 보았더니 소매에 팔을 훠기기 어려웠고 한 번 팔을 구부리면 솔기가 터졌으며 심한 경우에는 간신히 입고 나서 조금 있으면 팔에 혈기가 통하지 않아 살이 부풀어 벗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소매를 째고 벗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요망스런 옷일까! ……”<sup>33</sup>하고, 「星湖僕說」에서도 “末俗婦女之服 窄袖短裾 近於服妖”라고 개탄하고 있다. 女服의 기본 구성은 치마·저고리로 귀천의 구별은 없었으나 연령과 신분에 따라 차등은 있었다. 〈場面 1〉·〈場面 9〉·〈場面 12〉의 여인들의 복장을 살펴 보면, 저고리에 있어서 소매가 좁고 끼는 것은 모두 같으나, 길이에는 연령에 따라 짧은 婦女는 짧게, 老人은 조금 길게 입었으며, 치마는 班家 부녀자들은 많이 부풀린 넓은 치마폭에 발이 안보이게끔 길게 입었으나, 女奴婢들은 속바지가 보이게끔 거들치마로 짧게 거둬 입고 앞치마를 둘렀다. 가슴을 가

리려고 백색 치마허리를 모두 따로 착용하고 있다. 복색은 귀천 구별없이 청색계열이 많으며 머리 땋은 班家처녀는 홍치마를 입고 있다. 저고리의 복색도 매우 다양하며 직선 배래에 통이 매우 좁음은 위 문헌에서도 개탄한 바 있다. 신분의 구별없이 삼회장·회장·민저고리가 고루 입혀졌으나, 깃모양에 있어서는, 班家부녀는 당코깃이 많은데 비해 노비는 모두 칼깃을 입고 있다. 회장색은 자주회장을 많이 대었으며, 고름의 길이는 짧고 폭이 그리 넓지는 않다. 치마는 모두 오른 여밈을 하고 있다. 치마를 가리는 데 있어서도 班常과 四色黨의 偏色을 가리었다 하니 긴 뒤자락을 위로 여며서 훨씬 짧게 하여 班人임을 표시하였다 하나 〈場面 9〉·〈場面 11〉에서는 班常의 가림없이 오른 여밈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班人的 表飾보다는 黨의 表飾으로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 III. 服飾에 나타난 특징

金弘道의 平生圖 병풍에 나타난 인물들의 복식 양식이 회화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여러 면으로 복식의 특성이 나타나므로 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류층의 가정 환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것은 주인공 가족의 남자 禮服차림이 평민의 草履에 비해 갓신이다. 이 화면에서의 특징은 男兒의 검정댕기는 그 시대 남자들의 땋은 머리양식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붉은 저고리를 입은 남아의 모습은 회화학적인 표현이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붉은 색을 사용한 것은 관객들로 하여금 경사스러운 표식이 아닌가 생각되나, 이 장면에서의 어린이 衣裳의 색은 모두 붉은 색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류층의 여자복식은 상박하부의 형이다. 저고리의 短小化와 치마의 부풀림은 겨울에 여성 미를 잘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저고리와 치마 사이에 넓은 허리띠를 함으로써 분리선을 강조한

32. 「今之婦女 窄袖短衫 不知何自 而貴賤通用 殊可駭異 人習見以爲常 又其署月單衫 則縮下縫捲以向上 不得掩裳際 則大怪悖矣 此服妖矣 宜禁絕之」(卷之 八十, 禮考 二十七, 章服二).

33. 「時世之服 上衣太短窄 下裳太長博 服妖也 削衿之衫 撑幅之常 服妖也 試聞父老之言 古者女服寬制 故嫁時之衣可爲小斂之用… 試着新衣 穿袖甚難 一屈肘而縫綻 甚至纏著 過時臂氣不周 脹大難脫 削袖而救之 何其妖也」(卷之 三十, 士小節 第六, 婦儀一服食).

당시의 풍속을 볼 수 있다. 이것은 「朝鮮王朝韓國服飾圖錄」의 부인평복편 p.68의 허리띠를 치마 속에 두르고 p.70의 당코저고리를 입은 모습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되나 이 그림으로 보아서는 끝동이 매우 넓은 것을 볼 때 이것은 회화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3. 일상적인 생활복식은, 글공부를 하는 장면에서, 스승과 제자의 옷이 도포와 창옷으로 구별됨은 유교적 영향이 큰 것이다. 전체적으로 單色調의 화려하지 않은 색채, 즉 靑·白·엷은 玉色 등을 사용하였으며, 조대와 부속품의 색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官民과 庶民의 옷차림의 차이는 첨지·장옷·갓신·草履 등으로 역력히 구별되고 있으며, 의례복식은 남녀 모두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회화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다.

5. 남녀복식에서 戎服이 판서시임의 권위를 세우는 옷으로 착용되었고, 군졸들의 검정옷에 남색의 띠를 한 것과 回榜禮와 혼례 때와 같이 관복을 착용했음이 이 풍속도에서 나타나 있다.

6. 회갑잔치와 回婚禮에 보이는 자손들의 옷에서 처녀와 기혼자의 옷색깔 구분과 형태 등의 다양함은 회화적인 구성과 색채감을 더해준다. 상류계급의 회갑잔치는 화려한 의식 속에서 남자는 道袍에 紅色띠로서 가장 경사스러움을 표시하는 예복차림을 하였고, 여자는 치마·저고리 위에 족두리만을 함으로써 예복차림을 한 것이 특징이다. 回婚禮에서 남자는 婚禮服인 사모관대를 하고, 여자는 원삼을 입어, 짧은 시절의 혼례를 회고하는 의미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염원하는 壽와 福을 누렸음이 잘 나타난다.

## V. 結論

위 논문은 檀園 金弘道의 平生圖 병풍에 나타난 인물들의 복식고찰로, 시대배경인 英·正祖代는 독특한 민족문화의 융성과 더불어 복식에서는 전통복식의 완성기로 볼 수 있다. 각 장면의 내용은 다양한 인물의 등장으로 복잡한 社會規範에 따른 服飾文化를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었던 자료로서, 조선 후기 신분별에 따른 복식양식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冠服에서는 常服·時服의 착용 모습을 알 수

있었고, 戎服은 「續大典」의 帖裏制가 아닌 사대부의 便服인 도포를 색만 같게 하고 戎服 대신 착용한 것 같으며, 사대부 계층에서는 도포가 상복으로 모두 청색계통을 입었으며 이를 소년들도 입었다. 國初부터 시행령을 내렸던 明制인 儒服制度는 후에 와서 進士放榜服으로 명목을 유지하고 있어 儒生服도 도포가 통용되고 있음으로 이미 중국의 의관제도는 冠服에서만 습용되고 편복에서는 우리 옷이 常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戎服으로 쓰이던 帖裏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하급관리의 公服으로 쓰여지며 점차 소매통이 매우 넓고 길고, 袍의 길이도 길어져 軍服으로 쓰이기에는 이미 기능성을 잃었기에 그 제도를 달리 할 수밖에 없었고, 軍卒·馬夫·교꾼 등의 官奴와 私奴, 庶人們은 모두 소매통이 좁고 짧으며, 양 옆자락이 트인 활동적인 창옷을 上服으로 입고 있다.

부녀자 복식은 치마·저고리가 일반으로 조선 후기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까지 유행하던 窄袖형으로 저고리의 소매통이 매우 좁고 直배래이며 길이는 매우 짧아 가슴이 드러나도록 입었으며 연령이 높은 자는 조금 길게 입었다. 저고리의 형태는 같으나 깃의 모양에 따라 귀천이 구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班家女는 당코깃이 많았고 奴婢는 모두 칼깃을 하고 있었다. 치마에 있어서도 허리띠로 드러난 가슴을 가려 주는 것은 모두 같았으나 班家女는 치마를 모두 부풀리어 땅에 끌리도록 길게 입었고 奴婢들은 속바지가 드러나게 짧게 입어 신분을 나타내었다. 치마의 뒷자락은 班家女는 원여밈을 한다 하였으나 여기서는 班常 가림없이 모두 오른여밈을 하고 있어 이는 아마 黛色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 參 考 文 獻

- 金東旭.「韓國服飾史研究」. 서울；亞細亞文化社, 1979.
- 石宙善.「韓國服飾史」. 서울；寶晋齋, 1978.
- 石宙善.「韓國服飾史(續)」. 서울；고려서적, 1982.
- 孫敬子·金英淑.「韓國服飾史資料選集 I · II · III」. 서울；教文社, 1982.
- 孫敬子·金英淑.「韓國服飾史圖錄」. 서울；藝耕出版社, 1984.
- 柳喜卿.「한국복식사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 李京子.「韓國服飾史論」. 서울；一志社, 1983.
- 李勲鍾.「國學圖監」. 서울；一潮閣, 1968.
- 「經國大典」
- 「萬機要覽」
- 「四禮便覽」
- 「芝峰類說」
- 「增補文獻備考」
- 「朝鮮女俗考」
- 「朝鮮王朝實錄」
- 「韓國史」. 震檀學會, 乙酉文代社, 1971.